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 등을 출원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상표견본 도면의 수를 2장 이상에서 1장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보정하려는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의 서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sub>2</sub>로서)란의 2)다)(6)(가) 중 “이후”를 “이전”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아크릴로니트릴(ppm)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크릴로니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이하
	저장시설	20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차목의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란의 2) 중 “9호기”를 “10호기”로, “2호기”를 “4호기”로 하고, 같은 란의 3) 중 “10호기”를 “9호기”로, “4호기”를 “2호기”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타목의 대상시설란 중 “(6)가)”를 “(7)가)”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파목의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란의 3) 중 “2021년 1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변경 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 하는 한편,

아크릴로니트릴의 배출허용기준을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아크릴로니트릴 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3ppm 이하에서 20pp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고용노동부령 제304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더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목에 따른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권: 분양가격 중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